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98
----------	----

제안년월일 : 2003. 6. .

제안자 :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목포시장의 의견조회
- 제14차, 제15차, 제16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집중토론
- 제17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여 관리 일원화를 통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과 노인복지기금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5조제2항,제3항)
- 다. 이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라. 노인복지기금기금은 노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등에 사용함(안 제6조제2항)
- 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함(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7. 관련부서의견 : 해당없음
8. 예산사항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해당없음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참고사항 : 목포시장 의견(별첨)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등의 비용
2.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2. 노인복지기금 계정

④제3항 각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노인복지기금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지원시기는 별표 1의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 연 기할 수 있다.

1. 노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초생활보장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영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이내로 하되, 상환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사회국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주사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5조4항 각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목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목포시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목포시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및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 한다.

(별표1)

기금 조성기간 및 목표액(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89,919	51,833	52,750	58,502	61,720	65,114
목포시출연금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이자및기탁성금	39,919	1,833	2,750	8,502	11,720	15,114

○ 이자는 현행 정기예탁 이자율 5% 적용 산정